



출원 및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

1. 출원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등록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 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 기재란에 반드시 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개재시 반려처리)
- 출원인(대리인) 코드부여 신청 및 변경관련 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가능

② 출원인 코드 등록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 :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2) 전자문서 이용신고

- 전자문서(온라인 또는 FD)로 출원하고자 할 경

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청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CD)를 지금 받아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하여야 함.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이도 가능)

2. 출원시 공통사항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의장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2) 재외자의 출원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특허관리인)을 통하여만 가능
 - 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는 경우

3) 출원방법

가. 전자출원

①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금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②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나.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5) 제출처

가. ON-LINE 출원시

- 특허청 홈페이지 : <http://www.kipo.go.kr>
- 특허넷시스템 홈페이지 : <http://kiponet>.

[kipo.go.kr](http://www.kipo.go.kr)

- 시간 : 08:30~20:20

나. 방문 접수시

- 장소 : 특허청 출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 시간 : 09:00~18:00(동절기 09:00~17:00)

다. 우편접수시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특허청
- 우체국 소인일자(단, PCT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일로 인정함

6) 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도면

- 발명이 물건(기계, 기구, 장치)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으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 도면 미 첨부 시에는 불수리처분의 대상이 되어

4) 구비서류

구분	권리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
전자문서출원	ON-LINE	1. 출원서 : 1통 2. 요약서, 명세서, 도면 : 각 1통 * 방법특허인 경우 : 도면생략 가능 (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1. 출원서 : 1통 2. 도면(또는 사진, 모형, 견본) : 1통	1. 출원서 : 1통 2. 상표견본 : 1통 (가로세로 각각 3cm이상 7cm이내) 3. 색채(입체)상표 또는 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서면출원	FD	FD 1장과 FD제출서를 함께 제출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2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원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사유 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 각종 서식 및 작성요령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DOWN받을 수 있음



반려처리 됨

- 나.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출원
 -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함
 - 서면출원인 경우에는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FD, 명세서에 포함된 서열목록과 FD가 동일하다는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1) 접수증 교부

- 가. 신규 및 중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이 교부되어 여기에는 접수된 서류 각각의 고유 접수번호가 표기되어 있음.
- 나. 접수된 서류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서류라면 그 고유의 접수번호를 수수료 납부 용지에 기재하여 익일까지 납부하면 됨

2) 출원번호 통지서 교부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서 접수후 10일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단,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수취방법을 온라인 선택했을 경우 출원후 2~3일 내에 온라인으로 출원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3) 출원인(대리인)정보변경(경정)신고

- 가. 출원인 및 대리인의 주소, 인장, 대표자 등의 등록정보에 변경(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1부 제출로 해당 출원인(대리인)의 전체 출원건 및 중간서류상의 관련정보를 일괄 변경

- 나. 서면으로만 신고 가능

4) 포괄위임등록

- 가.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특정사건을 명기하지 않고 포괄위임을 하고자 할 경우 포괄위임등록신청서(포괄위임장 첨부)를 제출하면 포괄위임등록번호가 부여됨
- 나.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위임장 제출 효과 발생(단, 이의신청서, 이의반박서,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반드시 개별위임장을 제출)
- 다. 포괄위임등록·원용제한·등록철회서식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

5)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

- 가. 전자문서를 on-line으로 제출하고,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에 전자문서화 되지 않는 첨부서류(위임장, 각종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출원일 익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 나. 이 경우 첨부서류는 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봄
- 다. 만약 3일이 경과되어 제출될 경우에는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가 기간경과로 불수리되어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됨(이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로 보정대상이 되며, 추후 보정서에 의하여 제출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선원주의

- 가. 동일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간 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 특허를 허여할 것인가?
- 선원주의 :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허여. 한 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
- 선발명주의 : 진정한 발명자에게 허여. 미국
- 나. 선원의 종류

① 본래의 선원(특36조)

- 시기적 기준(日기준)
 - 익일출원 : 먼저 출원한 자
 - 동일출원 : 협의(협의 불성립시 쌍방 모두 출원 거절)
 - 실체적 기준
 - 발명의 동일성(請求範圍에 기재된 발명)
 - 주체의 동일성
 - 타인간은 물론 동일인간에도 적용
- ② 확대된 선원(특 29조 3항)
- 시기적 기준(日기준)
 -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원의 예외)
 - 실체적 기준
 -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이 되고 후원인 당해 특허출원은 請求範圍에 기재된 발명이 기준
 - 주체의 동일성
 -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완전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확대된 선원의 예외)
 - 요건
 - 당해출원이 타 출원보다 후출원일 것
 - 타출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당해 출원 후 일 것

7) 신규성

가. 신규성의 의의

- 발명이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
-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만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이 타당

나. 신규성 판단 기준

- 시기적 : 특허출원시(시·분·초)
- 지역적
- 공지 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다. 신규성 상실사유

-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 대상
 - 기술적 효과의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
 -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발표에 의한 공지
 -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 전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 요건
 -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동시에 제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 제출

8) 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 특허권 독립의 원칙

가.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 적임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각 국가별로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나.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음

- 다.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 4권 모두
 - PCT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 특허, 실용신안



특허권부방

9) 직무발명

- 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음
- 나.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갖음

10) 이중출원

- 가. 의의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의 「변경출원제도」를 폐지하고 「이중출원제도」를 채택
- 나. 가능대상 : 99. 7. 1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

다. 이중출원 가능기간

- ①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 특허출원 : 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후 1년 이내

라. 유의사항

- ①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 내에서만 이중출원 가능

- ② 특허와 실용신안의 이중등록은 인정되지 않음
(향후 1권리는 포기해야 함)

마. 효과 :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봄

11) 변경출원

가. 가능대상

상표와 서비스표간, 단독의장과 유사의장간, 의장심사와 의장무심사 상호간의 변경출원

나. 폐지대상

99. 7. 1부터 특허와 실용신안간, 특허와 의장간, 실용신안과 의장 상호간의 권리를 뛰어 넘는 변경출원은 폐지(단 99. 7. 1 이전 출원 건은 변경출원 가능)

다. 효과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최초 출원은 취하간주)

라. 변경출원 가능 시기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12) 출원보정

(1) 보정서 종류

가. 제출원인에 의한 분류

- 통지에 의한 보정 : 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란에 보정통지서의 발송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재
- 자진보정 : 보정하고자 하는 서류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를 기재

나. 제출내용에 의한 분류

- 서지사항보정 : 제출한 서류의 서지부분의 정정, 발명자의 추가 및 삭제, 미납된 수수료

납부, 기타 첨부서류의 제출 등, 상표 및 서비스 표지상 상품 보정

- 명세서등 보정: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의 정정시

요지변경이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음

(2) 보정서 제출시 주의점

가. 명세서등 보정과 서지사항보정을 동시에 하 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해야 함

나. 출원인 및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변경”을 이용

다.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을 단위로 보정

라. 서면출원후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전 : 식별번호 단위 보정은 불가능.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보정만 가능

- 전자화 기관으로부터 전자화 파일 송부 후 : 식별번호 및 식별항목 단위의 서면 또는 전자 문서 보정 가능

13) 심사청구제도

가. 의의 : 모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출원의 선·후에 관계없이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

나. 심사청구인 및 기간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청구 가능

- 심사청구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단, 신법적용분은 심사청구제도 없음)
의장·상표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3) 보정의 정도 :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내

다. 심사청구의 취하금지 및 미청구 취하

(4) 권리별 보정가능 기간

권리별	보정기간
특허 (구법적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3개월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청구와 동시에 의견제출(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내 거절사정에 대해 심판 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용신안 (신법적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후 2개월이내에 자진보정 가능 · 출원일로부터 2개월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보정명령 또는 기초적요건보정명령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
의장·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정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진보정 가능 · 사정통지서가 송달된 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특허공부방

- 심사청구는 취하불가
- 기간내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라. 심사처리기간

특허 · 실용신안 (구법적용분)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4개월
실용신안 (신법적용분)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후 등록
의장 표	출원일로부터 약 8개월
상표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14) 출원공개제도

- 가. 의의 : 심사유무와 관계없이 출원후 일정기간 이 경과하면 그 출원 내용을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

나. 출원공개 시기

-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 적용된 고안)은 출원일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 한때(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
- 신법적용된 실용신안 · 의장 ·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음 (단, 의장은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다. 공개의 효과

- ① 경고할 수 있는 권리 : 출원인은 출원공개 (PCT 국제출원은 국내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 가능
- ② 보상금청구권 발생
 -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향후 특허권 설정등록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
 - 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 가능(단,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내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함)

15) 우선권주장

- 가. 의의 : 산업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 진보성 ·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나. 우선권주장 기간

- 특허, 실용신안 :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
- 의장, 상표 : 우선일로부터 6월 이내

다. 선출원 및 우선권주장의 취하

-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 간주됨
-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우선권주장 취하 불가

16) 우선심사

- 가. 의의 : 특허 · 구법적용된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심사청구된 출원 또는 의장등록 출원으로서 다음 대상 및 요건에 해당되면 심사청구일자(특 · 실의 경우)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함.

나. 우선심사 대상

- ① 타인이 무단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
- ②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국익 및 공익보호차원) :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

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 출원, 자기 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다. 우선심사의 신청요건

- 심사청구된 출원(특·실의 경우에 한함)
- 대상 ①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대상 ②의 경우에는 출원공개 후 또는 조기공개 신청시에만 가능
-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 납부자번호 부여받아 수수료 납부

라. 우선심사의 결정

해당 심사관은 접수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

17) 지정기간 및 기간연장

가. 절차보정의 지정기간

-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까지 승인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나. 특허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2월 이내가 원칙
- 지정기간연장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이상 승인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2회이상 지정기간연장 가능)

다. 실용신안의 기초적 요건 심사와 관련된 지정기간

- 기초적 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보정서 제출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1회(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라. 상표·의장법에 의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

- 상표·의장과 관련된 의견서 등 제출 지정기간은 1월 이내가 원칙
- 필요한 경우 2회(매회 1월)에 한하여 지정기간연장 가능
(일괄하여 2회까지 지정기간연장 가능)

18) 이용발명

가. 의의 : 선 등록된 특허발명(A)에 새로운 요소 (a)를 추가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특허(A+a)를 받은 경우에 후등록 특허권자는 선 등록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만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후등록 특허(A+a)를 이용발명이라 함

나. 효과 : 선특허권자는 후특허권자에게 권리(A)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후특허권자는 선특허권자를 상대로 '실시권 허여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19)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원보호

가.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나.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사상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 형사상 보호(특허침해죄) :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특허권침해죄는 고소를 요하는 친고죄인 반면, 상표권침해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가능한 비친고죄임)